

◎ 통계청 고시 제 2024 - 173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중지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4 년 4 월 18일

통 계 청 장

-
1. 통계의 명칭 : 구직급여신청동향
 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고용노동부
 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: 제118044호 [2015.7.20.]
 4.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: 2024.4.8.
 5. 통계작성의 중지 사유 : 노동시장 동향 파악의 시의성 확보 및 행정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'구직급여신청동향' 통계를 '고용보험통계'에 통합